

제292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
행정·재무위원회 제5차 회의
[2022. 11. 23. 10:00]

서울특별시 강서구 통·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

2022. 11. 23.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·재무위원회

서울특별시 강서구 통·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2022년 11월 23일
전문위원 장 석 현

1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: 2022 - 107
- 나. 제 출 자: 강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: 2022년 11월 7일
- 라. 회부일자: 2022년 11월 11일

2. 개정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위임사항을 정비하고, 통장 자녀 장학금 수혜 자격을 확대하여 통·반 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「지방자치법」 인용 조문 개정(안 제1조)
- 나.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1조 변경에 따라 통장 임명권자를 동장으로 변경 및 문구 수정(안 제4조, 제5조, 제6조, 제7조, 제14조, 제22조)
- 다. 통장 자녀 장학금 수혜 자격 확대(안 제16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제7조 및 제12조,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1조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:

1) 입법예고 결과(2022. 9. 16. ~ 2022. 10. 6.): 의견 없음

2) 규제심사 결과: 해당 없음

3) 부패영향평가 결과: 원안 동의

4) 성별영향평가 결과: 개선의견 수용¹⁾

- 통장심사위원회 구성 시 ‘성별 고려’ 사항을 반영함

5. 검토의견

가. 개정 취지

- 「지방자치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법 적합성을 높이고, 통장 장학금 수혜 자격을 확대함으로써 통·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

1) 서울성별영향평가센터 성별영향평가 결과

-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 제2항에 따르면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
- 통장심사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개선의견을 따라 조례안 제5조 제2항에 해당내용을 추가하여 수정함

나. 주요 내용

- 안 제1조에서는 「지방자치법」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는 근거 조항을 「지방자치법」 ‘제4조의2제5항 및 제8조제1항’ 을 제7조의제5항 및 제12조제1항²⁾으로 수정함
- 안 제5조는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통장심사 위원회에 ‘성별을 고려’ 하여 위원을 구성함을 추가함
- 안 제6조는 ‘이장의 임명’ 만을 규정하고 있던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1조가 개정되어 동장의 통장의 임명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본 조례안의 통장 및 반장의 위촉을 ‘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한다’ 에서 ‘동장이 임명한다’ 로 수정함
- 안 제16조에서는 “다른 장학금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.” 라는 단서조항을 “타 장학금을 받는 경우 타 장학금을 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지급액보다 적으면 이미 받은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한다” 로 변경하여 통장 자녀 장학금³⁾ 수혜 자격 확대함

2) 제7조(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·면·동 등의 명칭과 구역) ⑤ 행정동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.

제12조(사무처리의 기본원칙) ① 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3)

구 분	통·반장	
	현행	개정
선발자격	1년 이상 근속 통장 자녀 ※ 통장 1명에 대하여 1회에 1명 신청	
선발인원	통장자녀의 10% 이내	
장학금액	1인 1,000,000원	
선발방법	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선정	
지급시기	1학기 개시 이후 학기 종료일 이내 지급(상·하반기 지급)	
중복지급	현행	개정
	타 장학금 중복 지급 제한	조례에서 정한 장학금 범위내 차액 지급

- 안 제4조, 제5조, 제6조, 제7조, 제14조, 제22조에서는 개정된 법령과 일치하게 ‘위촉’ 을 ‘임명’ 으로 ‘위촉해제’ 를 ‘해임’ 으로 용어를 정비함

다. 종합 의견

- 본 조례안은 「지방자치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통장 자녀의 장학금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 및 인용 조항을 정비하여 통·반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
- 특히, 통장 자녀의 장학금 수혜대상 확대를 통해 행정의 최일선에서 민의수렴 등 주민과의 가교역할을 하는 통장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

□ 지방자치법

제7조(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·면·동 등의 명칭과 구역) ⑤ 행정동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.

제12조(사무처리의 기본원칙) ① 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□ 지방자치법 시행령

제81조(이장 및 통장의 임명)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통에는 통장을 두고,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읍·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이장 및 통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·면장·동장이 임명한다.

③ 읍장·면장·동장이 제2항에 따라 이장 및 통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·군수 및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.